

| 의안처리상황표                                                                                                                                                                                                                                                                                                                             |                                          |
|-------------------------------------------------------------------------------------------------------------------------------------------------------------------------------------------------------------------------------------------------------------------------------------------------------------------------------------|------------------------------------------|
| 의안번호                                                                                                                                                                                                                                                                                                                                | 14                                       |
| 건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자                                                                                                                                                                                                                                                                                                                                 | 성북구청장                                    |
| 발의연월일                                                                                                                                                                                                                                                                                                                               | 2026년 8월 12일                             |
| 심사위원회                                                                                                                                                                                                                                                                                                                               | 행정기획위원회                                  |
| 의결결과                                                                                                                                                                                                                                                                                                                                | 2026년 9월 7일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
| 이송연월일                                                                                                                                                                                                                                                                                                                               | 2026년 9월 8일                              |
| 공포년월일<br>및법률번호                                                                                                                                                                                                                                                                                                                      | 년 월 일 조례 제 호                             |
| <p>&lt;요지&gt;</p> <p>성북구 소속 각종 위원회는 구정 전반의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미비하여, 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기준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p> <p>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시 위원의 임기를 조례에 명시하여 자치입법의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자치행정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4 |
|----------|----|

제출년월 : 2026년 8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성북구 소속 각종 위원회는 구정 전반의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미비하여, 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기준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시 위원의 임기를 조례에 명시하여 자치입법의 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10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6. 7. 9.(목) ~ 2026. 7. 29. (수)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1587 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 위원을” 을 “3개의 위원회를” 로 한다.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위원의 임기) <신 설>                                                                                                                             |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br>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br>-----<br>-----<br>----- 3개의 위원회를 -----<br>-----<br>-----<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개정안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시 위원 임기를 조례에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제2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4. 작성자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장 이 명 복